

의안번호	2211472
의 퇴 인	차규근의원
회 답 일	2025.7.25.
추계번호	25E37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 물가연동제 도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0조의 5제6항 및 제7항 등 (근로장려금의 산정)	○ 근로장려금 산정에 물가연동제 적용 - (현행)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안) 총소득기준금액, 총급여액 등 및 구간별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0조의 5제6항 및 제7항 등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비롯하여 총급여액 등 및 구간별 근로장려금을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조정하는 등 소비자물가에 연동하여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변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유형, 연간 총소득 합계액(수급대상자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비롯하여 향후 가구별 연간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의 증가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

□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물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

- 국세통계연보에서 소득금액(총급여액등) 규모별 수급가구수, 평균 수급액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가구의 정보가 아닌 소득금액 규모별 집계자료만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불가
 - 가구 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금액이 점증-평탄-점감구간 중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식에 차이가 있음
- 수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총소득 합계액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액으로서 현행 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의 총소득 합계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해보면, 추계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변화, 수혜가구의 명목소득 증가율¹⁾,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지 또는 하회하는지, 소득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격차 정도에 따라 지급액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현행 수급가구의 소득금액(연간총소득 합계액 총급여액 등)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2.9~3.9%)대로 증가하고, 신청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총소득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인 총급여액 등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9~2.3%)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동분을 추계하면, 현행 대비 세수감소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참고자료 참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연간 총소득 합계액, 총급여액 등 소득금액의 증가율을 의미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

[참고자료]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미시자료(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결과를 토대로 근로장려금 물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
 -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소득증가율 및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임의로 가정하여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수 변동분 추계
 - 매 연도 발생하는 신규 수급자는 고려하지 않음
- 본 비용추계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2023년 귀속 기준 수급자(재정패널조사자료 기준)²⁾를 대상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추계하며, 매 연도 발생하는 신규 수급자는 고려하지 않음
 - 2023년 이후 수급가구의 소득금액(연간 총소득 합계액, 총급여액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경제전망」(2024.9.)의 1인당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³⁾ 활용
 - 2023년 수급가구의 재산금액은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경제전망」(2025.3.)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⁴⁾ 활용
 - 근로장려금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 모의실험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보다 물가연동제 적용 시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세수감소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됨
 - (현행 유지) 총소득기준금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식이 고정된 상태에서, 현행 수급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2.9~3.9%로 증가하는 경우 총지급액은 연평균 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2) 2022년 소득과 2023년 소득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재정패널조사자료로 2023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자 수와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치를 산출하여 활용

3)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전년대비 증가율, %): ('24) 2.9 → ('25) 3.2 → ('26) 3.9 → ('27) 3.8 → ('28) 3.8

4)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전년대비 증가율, %): ('24) 2.3 → ('25) 1.9 → ('26) 2.0 → ('27) 2.0 → ('28) 2.0

-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금액(소득요건)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수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총지급액이 감소
- 현행 대로 점증·평탄·점감구간의 기준금액도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계
- (물가연동제 적용) 총소득기준금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식의 정액요소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따라 증가하고, 현행 수급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2.9~3.9%로 증가할 때 총지급액은 연평균 0.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정안에 따라 점증·평탄·점감구간의 기준금액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계
- 연간 소득금액 증가율 전망치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회함에 따라 수급가구수는 점차 감소하고, 가구당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총지급액은 5년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
- 다만, 이러한 결과는 향후 추계에 활용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표]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입감소분 추정: 2024~2028년(귀속연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현행 유지(A)	-45,412	-44,098	-42,621	-41,228	-39,999	-261,350	-42,672
(증가율)	(-5.4)	(-2.9)	(-3.4)	(-3.3)	(-3.0)	-	(-3.6)
물가연동제 도입(B)	-47,430	-47,748	-47,894	-48,054	-48,187	-287,305	-47,863
(증가율)	(-1.2)	(0.7)	(0.3)	(0.3)	(0.3)		(0.1)
세수효과(B-A)	-2,017	-3,650	-5,274	-6,826	-8,188	-25,955	-5,191

□ (추계결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2.6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다만, 동 추계결과는 개정안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 변화, 수급가구의 소득수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